

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2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반장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연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경비 및 편의 지원항목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편의제공(안 제12조)

- 반장을 대상으로 연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 규정 신설
- 그 밖의 경비 및 편의 지원항목 정비 및 명문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당초예산에 36,900,000원 반영하였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1. 9. 28. ~ 2021. 10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상해보험 가입
2. 향토지 구독 지원
3. 연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
4. 문화·체육행사, 직무교육, 표창수여 등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편의제공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2조(편의제공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상해보험 가입</u> 2. <u>향토지 구독 지원</u> 3. <u>연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</u> 4. <u>문화·체육행사, 직무교육, 표창수여 등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</u>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~③ (생략)

- 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력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(이하 “행정동”이라 한다)·리(이하 “행정리”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-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-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통신요금 50,000원 × 1회 × 738명(또는 반) = 36,900,000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과장 김진용
연락처	(033) 330 - 2232